

고운사요양원 영상정보장치 관리계획

고운사요양원 영상정보장치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장치”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CCTV)와 NVR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장치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장치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운사요양원 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장치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고운사요양원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장치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영상정보장치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장치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영상정보장치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권선천(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조병용(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권선천(시설장), 김동구(복지팀장), 이재옥(생활팀장)

※ 야간에는 안전 목적을 위해 당일 선임 야간근무자의 모니터링을 허용함.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영상정보장치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영상정보장치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장치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영상정보장치는 총 1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8대(8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7대(프로그램실 2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층별 각 1대, 식당 1대)

3. 현관 2대(외부출입), 엘리베이터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영상정보장치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1층 입구와, 1층 게시판 및 2층 게시판에 설치한다.

(내부 안내판 규격 210mm × 297mm / 외부 안내판 규격 297mm x 420mm)

③ 다음 각 호의 영상정보장치 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에 설치하고 잠금장치로 보호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영상정보장치 운영 모니터 (1층, 2층 각 1대)
2. 디지털 녹화기 (1층 사무실)
3. 그 밖의 부대장치 (잠금장치)

제7조(영상정보장치 성능 및 촬영시간 등)

고운사요양원 내 설치하는 영상정보장치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장치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영상정보장치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영상정보장치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영상정보장치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2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1층 사무실에 있는 NVR, CCTV녹화기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영상정보장치 사용 제한)

-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장치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4.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NVR 기기의 원격접속재생
(열람의 요청 시 녹화기기 파손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영상정보장치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장치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장치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 ③ 책임자는 영상정보장치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영상정보장치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 ① 책임자는 영상정보장치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장치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영상정보장치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열람 및 제공

제15조(열람의 요청)

-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케 하여야 함
- ② ‘고운사요양원 영상정보장치 내부관리계획’에서 명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에 대해 열람 요청할 수 있음
-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요청을 받으면 열람장소,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별지 제7호 서식)
 - 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열람의 일시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제16조(열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조치 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①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이 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요청자가 동의 시 관계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등을 입회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② 열람의 범위는 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③ 영상정보장치 영상자료의 열람은 해당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

- ④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 시 요양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 ⑤ 영상정보 사본 등 반출 시,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함

제17조(열람 및 제공의 거부)

- ①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해야 함
 -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③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에 따른 응급조치의 업무에 따라 조사 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함

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 요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신분증 및 공문서)로 요청할 수 있음
 - ※ 노인 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39조의7, 제39조의9, 제39조의11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학대 예방 활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열람 요청은 제한됨
- ②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요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영장 또는 공문

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③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요청 시 아래의 사항 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수급자의 인권보호,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 ④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공무원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함

제19조(노인 관련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임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수급자 상담 등을 위한 동행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극 협조해야 함
-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와 동행하거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열람 결과를 공유하여야 함
- ④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함
- ⑤ 열람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함

제20조(열람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이용일자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 파일명/형태/내용
- 이용목적/사유
- 이용 시간 및 이용 장소
- 담당자 성명 및 확인 서명

제4장 보칙

제21조(사무의 위탁)

- ① 책임자는 영상정보장치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의성군수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고운사요양원장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운사요양원장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고운사요양원장					

[별지 제 10호 서식]

고운사요양원 영상정보장치(NVR ·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영상정보장치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23. . . ~ '23. . . 까지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성명	서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영상정보처리장치 안내문

시설 안전과 화재예방, 사고 및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장치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입소 어르신 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노인학대 방지
설치 장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331 고운사요양원 건물내 1층, 2층
촬영 범위	1층 출입구 및 좌·우 복도, 생활실, 식당 2층 좌·우 복도, 생활실, 프로그램실, 엘리베이터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이용 안내	차후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 내용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증될 시 공개함. 타당한 사유 없이 공개 불가.(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설치 운영 관리자 권선천 (054-833-1254) 기기 운영 담당자 조병용 (054-833-1254)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고운사요양원장 귀하